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의안번호

31

제출일자 : 1998. 8. 22.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개정사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징수를 위하여 공개대상 정보의 종류 및 공개방법에 따른 수수료액을 정하고
- 군본청 또는 읍면에서 발급하는 각종 사실확인서중 수수료액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확인서의 항목을 신설하고 항목의 명칭을 도의 사실확인서발급지침에 맞도록 하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등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액을 정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징수 및 면제대상 신설

- 수수료 징수 대상중 “정보공개”를 삽입함(안 제1조)
-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정함 - 별표2-1(안 제3조 제3항)
 - 문서, 대장등 8개항목(29개 세부항목)의 요액을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함
- 정보공개시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정함(안 제7조 제1항제3호.4호)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에 따른 징수항목 신설 및 명칭변경

- 신상에 관한 증명 : 신설 3개항목, 개정 1개항목
-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신설 6개항목, 개정 2개항목

□ 의료기관의 개설등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항목신설 및 개정

- 보건사회관계 신고,허가등 : 신설 7개항목, 개정 2항목

■ 개정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18조.
- 내무부예규 제718호('90.6.29)사실확인서 발급지침 및 사실확인서추가 발급요령 [경상남도 종합민 13207-156('98.2.27)]
- 의료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23조의 2, 제26조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입찰참가신청” 다음에 “정보공개”를 삽입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2-1과 같다.

제7조 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4.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증명)란의 제3호 신상에 관한 증명증 “(1)부양사실 증명”을 “(1)부양가족 사실확인”으로 하고, (6) 내지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독자 사실확인	1통	300	
(7) 이장재직 사실확인	1통	300	
(8) 호(제)적 멸실확인	1통	300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증명)란의 제5호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중 “(6)공장원료 수요증명”을 “(6)원자재 소요량 사실확인”으로 하고, “(10)실수요자 증명”을 “(10)실수요자 사실확인”으로 하며, (18) 내지 (2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8) 소유 사실확인	1통	300	
(19) 경작 사실확인	1통	300	
(20) 조림 실적확인	1통	300	
(21) 식품품목 제조보고 사실확인	1통	300	
(22) 자동차 미소유 사실확인	1통	300	
(23) 풍수해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	1통	300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신청, 신고, 허가등)란의 제6호 보건 사회관계중 (1)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및 (9)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의료기관 관련 허가(신고)			
○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50,000	
○ 병원 개설허가	"	30,000	
○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	20,000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개설신고	"	20,000	
○ 의료기관 허가(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	"	10,000	
○ 의료기관 재개업 신청(신고)	"	1,000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필증 재교부	"	5,000	
○ 치과기공소 인정	"	20,000	
(9)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1건	10,000	

【별표2-1】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1】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

공개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1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3이상 3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10매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10매기준) 1회 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도면·카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1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3이상 3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10매기준) 1회 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녹음 테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분마다 3,0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녹화 테이프(비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분마다 3,0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영화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제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출력물:1매기준)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화(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u>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감사(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u>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u>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찰참가신청, 정보공개 및 감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u>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요율) ①(생략) ②(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3조 (요율)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u>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2-1과 같다.</u></p>
<p>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생략) 1. (생략) 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u>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u> 4. <u>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u></p>

현행				개정			
구분(항목)	기준	요액	비고	구분(항목)	기준	요액	비고
(신청,신고,허가등) 6. 보건사회관계				(신청,신고,허가등) 6.보건사회관계			
(1)의료기관의재개업신고	1건	1,000		(1) 의료기관 관련 허가(신고)			개정
			(신설)	○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50,000	
			(신설)	○ 병원 개설허가	"	30,000	
			(신설)	○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	20,000	
			(신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 소 개설신고	"	20,000	
			(신설)	○ 의료기관허가(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	"	10,000	
				○ 의료기관재개업신청(신고)	"	1,000	
			(신설)	○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필 중 재교부	"	5,000	
			(신설)	○ 치과기공소 인정	"	20,000	
(9)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소신고사항의변경 신고	1건	500		(9)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개정
(이하생략)				(현행과 같음)			